

# 「부산 미래산업 전환펀드 1호」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

동남권 중소·중견기업의 산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「부산 미래산업 전환펀드 1호」의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## 1. 선정개요

### 1-1. 블라인드펀드(모펀드 제안방식)

| 항 목     | 내 용   |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|
|---------|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
| 출자계획    | ○ 총 450억원 이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| 선정 운용사 수  | 운용사별 출자금액 | 펀드별 최소결성금액 | 출자비율   |
|         | 3개  | 150억원     | 750억원      | 20% 이내 |
| 접수일시    | ○ 2025년 8월 8일 (금) 16:00까지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|
| 심사결과 발표 | ○ 2025년 8월 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|
| 펀드 결성시한 | ○ 선정일로부터 4개월*<br>* 단, 부득이한 경우 한국성장금융 협의하에 연장 가능 |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|

### 1-2. 프로젝트펀드(운용사 제안방식)

| 항 목      | 내 용  |  |  |  |
|----------|--|--|--|--|
| 출자계획     | ○ 약 101억원에 대하여 운용사 자율제안*<br>* 재원 소진 시까지 수시접수 및 선정  |  |  |  |
| 모펀드 출자비율 | ○ 약정총액의 30% 이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
| 펀드 결성시한  | ○ 최종 선정일로부터 4개월*<br>* 단, 부득이한 경우 한국성장금융 협의하에 연장 가능 |  |  |  |

### 1-3. 공통사항

| 항 목      | 내 용  |  |  |  |
|----------|--|--|--|--|
| 운용사 신청자격 | ○ 제안서 접수일 현재 「출자대상 투자기구」의 관련법규에 따른 펀드 결성과 업무집행이 가능하도록 국내에 설립된 법인           |  |  |  |
|          | ○ 2개 이상의 운용사가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, 펀드 운용을 위한 법상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함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
|          | ○ 제안운용사에 운용중인 기존 펀드 정관(규약)에 유사한 목적을 가지거나 경합 소지가 있는 펀드 설립을 금지하는 경우 사전 협의 요망 |  |  |  |

| 항 목           | 내 용   |
|---------------|---|
| 우대사항          | ○ 부산 지역에 거점(본점 및 지점 포함)을 두고 있는 운용사(Co-GP 운용사<br>中 최소 1개 운용사 이상)   |
| 출자대상<br>투자기구  | ○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<br>○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<br>○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벤처투자조합*<br>* 벤처투자조합으로 제안시 벤처투자법 제51조 준수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<br>○ 상기와 유사한 목적의 국내 집합투자기구, 투자조합 포함<br>※ 본 계획에 따라 선정된 위탁운용사가 관련 법규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투자기구의 변경이<br>필요한 경우, 해당 투자기구에 대한 운용자격을 갖추고 있고, 본건 펀드의 운용에 불리하지<br>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결성 전까지 신청 투자기구에 대한 변경 가능 |
| 운 용 사<br>선정방법 | ○ 홈페이지*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출자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<br>- 운용사, 운용인력, 펀드운용계획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<br>* 한국성장금융 : www.kgrowth.or.kr (출자사업공고)  |

## 2. 투자대상

- 투자대상은 국내·외 기업 등을 대상으로, 투자기간 내 아래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의무투자비율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
### 주목적 투자대상 및 의무투자비율

- 동남권 소재<sup>주1)</sup>한 산업전환<sup>주2)</sup> 중소·중견기업<sup>주3)</sup>에 대한 투자에 모펀드 출자액 1.5배 이상을 의무투자 (단, 부산시 소재 기업에 해당하는 투자는 의무투자금액의 50% 이상을 투자)

주1) 동남권(부산·울산·경남) 지역에 본점, 지사, 연구소, 공장 등 주요시설\*을 하나 이상 갖춘 기업(펀드결성일로부터 투자(납입)기간 내 동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)

주2) 아래 분류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

- ① 녹색전환 : 혁신성장공동기준 '탄소중립·녹색경제 실현' 관련 품목 영위하거나 추진 중인 기업, K-Taxonomy\*에 부합하는 녹색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또는 예정인 기업, 녹색 관련 산업으로 신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 등

\* 환경부가 제정한 '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'에 따름

- ② 디지털전환 : 혁신성장공동기준 '산업 선진화·체질 개선' 관련 품목 영위하거나 추진 중인 기업, 스마트팩토리(AI, 로봇 활용 등)를 구축 중인 또는 예정인 기업, 디지털 관련 산업으로 신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 등

주3) 아래 분류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

- ①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'알기 쉽게 풀어쓴 중견기업 범위 해설'에 따름  
② 중견기업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후보기업  
③ 투자시점으로부터 2년 내 중견기업(중견기업 후보기업 포함)이 되는 중소기업 투자의 건  
④ 중견기업 분류\*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(직전 3년 평균 또는 직전연도)의 50% 이상을 달성한 중소기업  
⑤ 중견기업이 전략적 투자자(SI)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 투자의 건\*\*

\* 산업통상자원부의 '알기 쉽게 풀어쓴 중견기업 범위 해설'에 따른 규모기준 및 독립성 기준을 모두 포함

\*\* 투자대상기업(중소기업) 또는 전략적투자자(중견기업) 중 1개 이상이 동남권(부산·울산·경남) 지역에 소재하고, 투자시점으로부터 5년 또는 최종 회수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동남권(부산·울산·경남) 지역에 소재지 유지 必

※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하되 펀드의 투자를 통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에서 분리되는 중소·중견기업은 주목적 투자대상에 포함 가능

### 3. 주요 출자조건

#### 3-1. 블라인드펀드(모펀드 제안방식)

| 항 목            | 세 부 내 용   |
|----------------|---|
| 최 소<br>결 성 금 액 | ○ 최소 모펀드 출자금액 5배 이상   |
| 출 자 비 율        | ○ 약정총액의 20% 이내  |
| 납 입 방 식        | ○ 수시납(Capital Call) 또는 분할납  |
| 운 용 인 력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핵심운용인력은 총 3인 이상이 참여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제안펀드 규모 및 운용 전략, 운용인력의 경력, 역량 및 실적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인원으로 제안</li> </ul> </li> <li>* 공동 운용의 경우 위탁운용사별로 각각 핵심운용인력 2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함</li> <li>○ 자격 요건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핵심운용인력의 투자경력 평균은 4년 이상이어야 하며, 투자경력 3년 이상 경력자 2인 이상이 참여</li> </ul> </li> <li>※ 핵심운용인력 관련 세부 사항은 제안서 엑셀 서식 '작성요령' 참조</li> <li>○ 핵심운용인력은 출자대상 투자기구의 근거법령에서 요구하는 펀드 운용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</li> <li>○ 펀드 결성 시 핵심운용인력은 규약(정관)에 기재</li> </ul>  |
| 투 자 기 회<br>제 공 | ○ 공동투자를 위한 프로젝트펀드 조성 시 한국성장금융에 투자 우선 기회를 제공해야하며, 관리보수 우대 방식을 포함하여 제안해야 함  |
| 기 타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본 공고에 의해 운용사가 제안한 출자조건(출자금액, 보수 등)의 적용 여부는 선정 후 최종 결정 예정</li> <li>○ (협업방안) 제안펀드·제안사·피투자기업과 부산시 간 시너지 창출 및 협업방안을 제안 운용사가 자율 제안</li> <li>○ 결성과정에서 보수구조 등 공고 조건에 대한 조정요청이 있을 경우, 펀드 조성목적 및 주요 출자조건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 가능</li> <li>○ 책임투자(ESG, 스투어드십코드 등) 관련 운용사 내규, 구축 및 운영 현황, 도입계획 등에 대해 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, 심사시 반영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환경보호(E), 사회적 책임(S), 적정한 지배구조(G) 요소 등을 종합 고려</li> </ul> </li> <li>○ 미합중국의 은행지주회사법(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), 최종시행규정(Volcker Rule Implementing Regulations) 등을 준수해야 함</li> <li>○ 본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사모투자 일반 관행에 따르며, 한국성장금융과 개별 협의하여 결정</li> </ul> |

※ 존속기한(투자기한), 운용사 최소출자비율, 관리보수, 성과보수 등은 펀드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운용사 자율 제안

### 3-2. 프로젝트펀드(운용사 제안방식)

| 항 목              | 세 부 내 용   |
|------------------|---|
| 모 펀 드<br>출 자 비 율 | ○ 약정총액의 30%이내에서 개별협의  |
| 운 용 인 력          | ○ 핵심운용인력 총 1인 이상 참여<br>- 투자경력 5년 이상 경력자 1인 이상이 참여할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기 타 사 항          | ○ 운용사 출자금액, 공동 운용(Co-GP) 여부, 존속기간, 투자기간, 관리보수, 성과보수 등은 펀드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운용사가 개별 제안 |

### 3-3. 공통사항

| 항 목                    | 세 부 내 용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출 자 자<br>제 한           | ○ 출자자는 기관투자자 및 법인으로 제한<br>- 단, 개인출자자(운용인력, 특수관계인 등)의 출자가 책임 운용강화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<br>○ 타 정책자금과의 매칭시 한국성장금융과 사전협의 필요 |
| 수 탁 회 사                | ○ 한국성장금융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Pool에서 선정<br>○ 펀드의 미투자자산 중 일부는 수탁계약에 따라 은행의 확정금리부 금융상품에 운용 가능<br>○ 펀드자산의 관리는 수탁회사와의 업무지시서를 통해서만 가능             |
| 회 계 감 사 인              | ○ 한국성장금융이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회계감사인 선정   |
| 펀 드<br>전 자 보 고<br>시 스템 | ○ 펀드 전자보고 시스템 사용 의무<br>○ 펀드운용 등에 대하여 한국성장금융이 지정하는 전자문서 방식으로 보고<br>○ 시스템 구축 및 사용 비용은 운용사가 부담  |

## 4. 선정 배제, 취소 기준

### □ 선정 배제

- 법령 등의 준수와 관련하여 운용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, 동 사유로 펀드의 적법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 - 제안시점 현재 법령 위반 또는 시정 명령 미이행(미해소), 업무정지 상태에 있는 경우
  -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법령위반 등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

-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를 합산하여 3회 이상 받은 경우
  - 1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관주의
  - 2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을 제외한 펀드운용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관계당국으로부터 받은 경고·시정명령·업무정지
- ※ 다만, 법령위반 등 제재내역이 본 펀드 운용부서, 운용사의 임직원 등과 관련성이 적은 경우는 선정 배제 사유에서 제외 가능
- 회사 및 펀드 운영상 도덕적 해이 또는 제3자 경유 등을 통해 사실상 법령을 위반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
- 자산건전성이 취약하거나,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위탁운용사로서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투자업체 발굴 및 투사 의사결정 등 펀드 운용과정에서 대주주 등 외부의 압력으로 위탁운용사로서 독립적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제안 펀드의 핵심운용인력과 운용사 대표이사가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감독당국으로부터 감봉(직원인 경우) 또는 문책경고(임원인 경우)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
- 위탁운용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·형사상 소송의 진행, 리스크 관리, 컴플라이언스 등의 위험관리체계 부재, 경영권 불안정, 운용인력의 잦은 이동 등으로 펀드의 안정적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한국성장금융의 운용 펀드가 출자한 펀드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의무의 불이행 행위 등을 한 위탁운용사로서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고의적 누락 또는 중대한 오류 등으로 중요한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- 공고일 이후 위탁운용사 또는 제3자가 출자자의 선정 절차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

## □ 선정 취소

- 펀드의 최소결성금액(조정된 경우 조정 후 금액을 말함)에 미달하는 경우
- 한국성장금융이 결정한 출자조건을 위탁운용사가 수용하지 않아 규약(정관 등 펀드 관련 계약을 포함, 이하 동일) 협의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
- 위탁운용사가 타 출자자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,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
- 위탁운용사가 법령 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기타 우회적인 방법 등으로 사실상 법령위반 상태에 있어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위탁운용사 선정 후 결성총회까지 선정 배제 사유 또는 당해 펀드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
## 5. 제재 사항 및 기타

### □ 제재 사항

- 결성시한(협약에 의한 연장기한 포함) 내 펀드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위탁운용사 또는 선정이 취소된 위탁운용사에 대해서는 각각 결성시한 또는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하 출자를 제한할 수 있음
  - 다만, 관련 법규상 제한 등의 사유로 인해 펀드결성이 지연될 경우 제재부과 대상에서 제외 가능
- 선정된 펀드가 존속기간 중 규약(정관) 상 투자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위탁운용사에 대해 투자기간 종료일 또는 펀드 해산일로부터 1년 이하 출자를 제한하며, 기지급된 관리보수를 환수하거나 성과보수를 미지급할 수 있음
- 위탁운용사의 중요사항 변동 보고 누락, 규약(정관)상 위반사항, 관리미흡 등 운용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유·무형의 손실 등의 발생시, 위탁운용계약 해지, 손해배상, 신규 자금배정금지, 기지급된 관리보수의 환수, 지급예정인 관리보수의 삭감, 성과보수 미지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선정된 운용사가 출자확약서 등의 제출에 따라 우대를 받았으나,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 3년 이하 출자를 제한하고, 실제

출자금액이 당초 제출한 출자확약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년 이하 출자를 제한할 수 있음

- 출자대상 투자기구 결성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최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자대상 투자기구를 해산할 수 있음
-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사실 기재 시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에서 배제하며,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하고 제재 통보일로부터 3년 이하 출자를 제한할 수 있음
  - 특히, 운용사 및 운용인력의 투자실적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허위, 조작하여 제출하거나 누락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에서 배제하며,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하고 제재 통보일로부터 3년 이하 출자를 제한함
- 선정된 운용사가 펀드 운용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규약 등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, 고의적·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재 통보일로부터 3년 이하 출자를 제한할 수 있음

**□ 기타 \* 모펀드 제안방식에 한함**

- 접수일시 내 접수처 도착분에 한해 접수하며, 한국성장금융이 요청하지 않은 접수 후 제안사항 변경 및 추가자료 제출 등은 허용하지 않음
- 제안서 작성기준일은 **2025.6.30.**로 하며, 핵심운용인력 등의 참여인력은 접수일 현재 기준으로 함

**6. 선정절차 및 일정 \* 모펀드 제안방식에 한함**

**□ 선정 절차**

- 공고 → 제안서 접수 → 서류심사 → 현장실사 → 제안(구술)심사 → 최종선정

**□ 선정 일정**

| 일 자         | 내 용             | 비 고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2025. 8. 8. | 제안서 접수          | 10:00~16:00 까지 |
| 2025. 8월 중  | 최종 선정 및 선정결과 발표 | 개별 통지          |
| 2025. 12월 중 | 펀드 결성 완료        | 선정일로부터 약 4개월   |

※ 세부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## 7. 지원방법 및 출자 설명회

### □ 지원방법 \* 모펀드 제안방식에 한함

- 한국성장금융이 정하는 제출서류\* 및 그 내용을 포함한 USB메모리 1개를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시한 내 퀵서비스, 우편 등으로 비대면 제출

\* 제출서류 및 관련양식은 공고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
(관련 양식은 출자 설명회 일자까지 별도 공지 예정)

- 제안(구술)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운용사는 별도 PT자료를 제출  
- 분량 : 20페이지 이내 (제출 방법 및 양식 등은 별도 안내 예정)

### □ 출자 설명회

- 일시 : 2025년 7월 18일(금) 15시

- 장소 : 한국성장금융 대강당(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, SK증권빌딩 11층)

\* 단, 출자 설명회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가능하며, 변경 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예정

\*\* 출자 설명회에 참석을 원하는 운용사는 2025년 7월 17일(목)까지 하기 메일주소로 참석인원 관련 정보(참석 인원수, 성함, 직급 등)를 송부하여야 하며, 운용사별 참석인원은 3명을 초과할 수 없음

\*\*\* 본 출자 설명회 외 별도의 대면 또는 비대면(온라인) 설명회는 추가 개최하지 않을 예정

## 8. 접수처 및 문의방법

□ 접수처 :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(주) 구조혁신팀

(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31, SK증권빌딩 11층)

□ 문의방법 : 한국성장금융 구조혁신팀 (02-2090-9187)

E-mail : namukim@kgrowth.or.kr

2025년 7월 11일

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(주)